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80
----------	--------

제안년월일 : 1999년 5월 18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황 의 형

1. 제안이유

- 협의회 위원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선정의 경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선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 협의회 운영의 공개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조문의미 파악을 보다 평이하게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위촉직 위원 선정을 보건위생기관,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요식업협회, 여성단체 관계자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하여 위촉직 위원 선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위촉토록 규정함.(안 3조 제2항)
- 협의회 운영에 대한 공개근거 마련과 조문의 의미 파악을 보다 평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 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원활한 의사교환을 위하여 필요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수정안 대 비 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1. 시의회 2. 경찰서 3. 보건위생기관(보건소) 4. 관공업체와 유흥 및 요식업협회 5. 기타 유관기관 또는 시민대표	제3조(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다음 각호와 같이 당면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간사는 해당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1. 당면직 가. 파주시의회의장 나. 파주시부시장 다. 파주경찰서장 라. 파주교육장 마. 파주세무서장 바. 파주소방서장 2. 위촉직 가. 보건위생기관 관계자 나.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요식업협회 관계자 다. 여성단체 관계자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제3조(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위촉직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7조(회의) 협의회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를 원할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한 비공식이어야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원활한 의사교환을 위하여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